

2024년 하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0일

성 동 구 청 장

1. **융자규모:** 총 5억 원(구자금 5억 원)
2. **접수기간:** 2023. 9. 23.(월) ~ 9. 27.(금)
3. **융자대상:**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(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)

[제 외 대 상]

-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
- 신용불량자, 연체자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
- 휴·폐업 중인 업체
-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
-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·신고 미완료 업체(허가·신고대상 업종)

※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, 후순위 적용

4. 융자조건

구분	중소기업	소상공인
융자대상	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	
지원규모	총 5억 원 이내	
융자한도액 *	2억 원 이내 (5천만 원 초과)	5천만 원 이내
융자은행	성동구 소재 신한은행, 기업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 전 지점 (보증서: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)	
대출금리	1.5% (구자금) ※ 은행협력자금: 시중은행금리의 1% 이자 지원	
자금용도	시설자금, 운전자금, 기술개발자금	
상환조건	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	
담보조건	부동산, 신용, 신용보증서 등	

* 매출액 1/4 이내. 단,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내

※ 대출조건: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, 신용보증서 등)이 있어야 함

- 부동산: 융자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
- 신용보증서: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

(문의: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☎2174-4300. 4309)

5. 신청절차

금융기관 사전상담	· 부 동 산 : 융자은행 · 보 증 서 :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→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
↓	
융자신청 접수	·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
↓	
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	·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
↓	
융자실행	· 융자은행,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· 융자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

6. 구비서류(구비서류 지참 후 용자은행 사전 상담 필수)

1) 중소기업 (대표, 임원 제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) (5,000만 원 초과)

① 용자 신청서(붙임1) 및 사업계획서(붙임2)	⑤ 거주지 ·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
②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	⑥ 국세 · 지방세 납세 증명서(대표자, 사업자)
③ 법인등기부등본	⑦ 협약서 (붙임4) 및 평가사항 체크리스트(붙임5)
④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,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⑧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1부 (고용보험,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)

2) 소상공인 (5,000만 원 이내)

① 용자 신청서(붙임1) 및 사업계획서(붙임2)	⑤ 거주지 ·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(자가인 경우 생략)
②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	⑥ 국세 · 지방세 납세 증명서(대표자, 사업자)
③ 주민등록등(초)본	⑦ 협약서 (붙임4) 및 평가사항 체크리스트(붙임5)
④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(면세사업자: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)	⑧ 금융거래확인서 (금융기관 1,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)

※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별도 서류 은행에서 요청 가능

※ 법인사업자 해당시: 법인등기부등본,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, 주주명부 사본

7. 용자업체 유의사항

- 1) 용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
- 2) 구 자금을 용자받은 업체가 휴 · 폐업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용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
- 3)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, 대표자,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

- 4) 용자 상담 이후 용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
용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

9. 접수 및 문의처

1) 신청서 및 관련서류

- 성동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d.go.kr/>) 접속 → 고시/공고 →
“2024 하반기 추가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 공고”

2) 사전 은행상담 이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

3) 문 의

- 지역경제과: ☎2286-5454
-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: ☎2174-4300, 2174-4309
(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상담 진행 가능)
-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: ☎6023-8708

【붙임 1】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[제4조 관련]									
신 청 인	대표자 성명	(남 / 여)			생년월일				
	주 소				전화번호 (핸드폰)				
	업 체 명				E-mail				
사 업 체 현 황	사업자등록번호			업종		설립연월일			
	사업장소재지								
	주 생산품목					상시 종업원 수	명		
	사업체 규모	자산총액	백만 원		총매출액	백만 원			
신 청 자 금		대출희망은행(지점)			담보제공		신청금액		
구 자 금					부동산		백만 원		
					신 용 신용보증서				
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란		은행 지점							
		상 담 직 원 명(직함)							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 신청인(대표)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									
첨부서류		(공 통)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분증 ② 최근3개년 재무제표,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(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) ③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(자가인 경우 생략) ④ 국세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협약서 ⑥ 우선순위 기업 인증 서류 등							
작성요령		1. 은행에서 작성할 서류 (신용보증신청서, 신용보증약정서, 신용정보조회 등 동의서 등) 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문의(전화 2286-5454) 3.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							

사업 계획서

1. 일반현황

가. 기업체 연혁

※ 설립, 증자, 대표자·상호·업종변경, 자본증자 공장신축, 이전 등 기업의 주요사항을 기재함

년 월 일	주 요 내 용			비 고
. .				
. .				
. .				
. .				
사업장 형 태	☐ 자가 / ☐ 임차	사업장규모	대지 m ² / 건물 m ²	

나. 대표자 관련사항

성 명				전화번호	
				휴대폰	
경력	기 간	기 업 체 명	주 생 산 품 목	담당업무 (직위)	
	~				
	~				
	~				
	~				
포 상 (업체포상 포함)		수 여 기 관 명	포 상 명	내 용	일 자

주) 「포상」란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, 지방자치 단체, 공공기관, 협회, 모기업 등으로부터 수상한 포상을 기재

2. 제품 및 영업현황

가. 제품의 개요

주 생산 품 목	특 성, 유 사 제 품

나. 판매실적(최근년도 실적을 연차적으로 기재)

(단위: 백만 원)

판 매 실 적(매출)			
국 내 실 적			
수출실적(LOCAL수출포함)			
수출비율(%)			
계			

※ 수출비율 = (수출실적/총매출) × 100

다. 주요거래처 현황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업체명	대표자	거래품목	판매금액	전체매출액중 거래비중(%)	비 고 (거래조건등)
국내판매						
수 출						

3. 소요자금 집행 계획(별지 작성 가능)

(단위: 백만 원)

구분	내역	금액
기술개발비용		
원부자재구입		
생산비 및 부대비용		
인건비		
기타		
총 소요금액		
고용창출계획	○ 고용인원: 명 ○ 고용분야: ○ 고용시기: 20 년()월	

4. 담보 현황(융자은행 사전상담 내용 기재)

가. 부동산(해당업체만 기재)

(단위: 백만 원)

구분	소재지	지목 및 구조	면적 (m^2)	소유자	은행 평가액	기 담보설정액	신청가능액

나. 신용보증 내역(해당업체만 기재)

(단위: 백만 원)

보증기관명	신용평가액

【붙임 3】 용자 및 보증 제한 업종

1. 재보증제한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56211	일반 유흥주점업
56212	무도 유흥주점업
68	부동산업. 다만, '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' 및 '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(소비자)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,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,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)을 제공하는 경우'는 제외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유평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,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다단계판매업.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
	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

2. 「중앙회장이 지정」한 재보증제한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도박 및 게임 관련	•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•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•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(47912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	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	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•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	•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•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건전 문화 관련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	• 성인용품 판매점
	•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• 흥신소
	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•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•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 중	•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	• 기획부동산업 ^{주)}

주)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협약서

당사는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용자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자 취소 및 회수는 물론 이와 관련된 기타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협약합니다.

- 준 수 사 항 -

- ◆ 이 자금은 융자기관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아니한다.
- ◆ 업체의 이전, 양도, 진출, 대표자 변경, 휴·폐업 및 생산품 변경 등 업체의 일체 변동사항은 즉시 구청에 신고한다.
- ◆ 기타 각종 자료제출 및 자금의 사용처 요구 시 적극 협조한다.

이
유
년

업체명:

소재지:

대표자: (인)

성동구청장 귀하

【붙임 5】

□ 평가사항 체크리스트(해당되는 사항에 ○표)

연 번	평 가 항 목	입 증 서 류	해당여부
*	이커머스 피해 입점 기업	· 입점 확인 내역서, 대금 정산 미지급 내역서	
1	성동구 관내에서 기업체 경력 10년 이상	· 사업자등록증명원	
2	여성 기업	· 여성기업확인서 (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인증)	
3	청년 기업	· 공고일 기준 대표자 19세 이상 39세 이하	
4	성수 IT 진흥지구 권장업종 (정보IT산업 또는 연구개발(R&D)업종 대상)	· 소득세 신고화면 출력본(주요업종코드 必) -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함 ·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·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제출 · 정보통신산업 또는 연구개발 업종 한정	
5	지식산업센터(공장용도)에 입주 업종 (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기반산업)	· 분양계약서(임대차계약서) · 소득세 신고화면 출력본(주요업종코드 必) -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함 ·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·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제출 · 제조업, 정보통신업, 지식기반산업 한정	
6	유연근무제 시행 업체	· 유연근무제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·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서 및 근무시간 확인서(내규) · (현미시행 업체의 경우) 유연근무제 사업계획서	
7	젠트리피케이션 피해위기 소상공인	· 현재 건물임대계약서 · 건물주로부터의 요구서(임차료 상승분)	
8	벤처기업	· 벤처기업 확인서, · 이노비즈인증, 메인비즈 인증	
9	성동구 경력인정서 인정 협약 체결기업	· 성동구 경력인정서 발급사업 관련 경력인정서	
10	우수제품 생산	· 표준기구인증서(KS, ISO, MT 등)	
11	산업재산권 보유	· 실용신안등록증, 특허증 · 상표등록, 의장등록증 ·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취득	
12	장애인 고용 기업	·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어야 함 · 근로자 명부 등 고용 확인 서류 · 피고용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· 6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	
13	구민 채용 기업	·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어야 함 · 건강보험 가입 기준 6개월 이상 근로	
14	수출 비중이 매출액의 10% 이상인 업체	· 수출실적증명 서류 · 직접수출기업: 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서 발급 · 간접수출기업: local L/C,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수출실적을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아 제출	
15	기업활동과 관련한 표창	· 표창사본(공공기관의 장 이상이 수여) · 공고일 기준 3년 이내	
16	지역사회 기부 업체(종교 활동 제외)	· 기부증서(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)	

【붙임 6】

유연근무제 사업계획서

1. 사업장 현황			
사업장명		사업자등록증 번호	
소재지 주소		대표자	
2. 신청내용			
관내 출퇴근 지하철역 혼잡도 개선	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	☐ 시차출퇴근제	명
		☐ 선택근무제	명
		☐ 재량근무제	명
		☐ 재택근무제	명
		☐ 원격근무제	명
3. 유연근무 활용 계획			

- ※ 시차출퇴근제: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(1일 8시간, 주 40시간)을 준수하면서 근로자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
- ※ 선택근무제: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.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정.
- ※ 재량근무제: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.
- ※ 재택근무제: 자택에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제도.
- ※ 원격근무제: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.